

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8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8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8. 30

(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계과장 양정열

나. 제안사유

- 2003년 1월1일자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체계가 바뀌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외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선 계획-후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,
- 관리지역은 기초조사를 토대로 토지적성 평가결과에 따라 보존관리·생산관리·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,
- 군 계획시설 중 현안사안에 대한 도로신설과 민원제기지역에 대한 노선폐지 용도지역변경,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화순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용역명 : 군관리계획 변경(결정) 용역수립(안)
- 용역회사 :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(대표 :김영삼)
- 계획의 범위
 - 공간적 범위
 - 도시지역 6개소 74.007km²
 - 관리지역 전체 221.177km²
 - 내용적 범위

- 비도시지역 - 화순군 전체(13개읍면)
 - 관리지역 세분화
 -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 검토
- 도시지역 - 6개 도시지역 (군 계획시설 변경)
 - 용도지역계획 : 토지적성 평가에만 반영, 도시계획상 화순군 현안사업 및 시가화 예정용지 검토
 - 기반시설계획 : 군 현안사업 및 민원제기 지역에 대한 군 계획시설 검토
 -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: 광덕지구(244,989㎡)

○ 관계법령 및 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
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3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4. 토론요지

<토론자 : 임지락>

본 안건 중 민원사항 조치결과(미반영)에 신기리 학교시설 부지해제 요구 조치결과 “미반영”을 “반영”으로 수정코자 함.

5. 심사결과

“수정가결”

6. 붙임 :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

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6. 8. 30

제안자 : 임지락 의원

1. 수정이유

- 화순읍 유천리 일원에 학교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로 해제요구가 있었고, 현지점에서 학교신축의 계획이 해소됨에 따라 신기리 학교시설 해제요구 조치결과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- Ⅲ-2. 군계획시설 변경

민원사항 조치결과 [미반영] - ⑬

신기리 학교시설 해제요구 중 조치결과 “미반영”을 “반영”으로 한다.

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

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Ⅲ-2. 군계획시설 변경

민원사항 조치결과 [미반영] -⑬

신기리 학교시설 해제요구 중 조치결과 “미반영”을 “반영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안	수 정 안
<p>Ⅲ-2. 군계획시설 변경</p> <p>민원사항 조치결과 [미반영] -㉓</p> <p>신기리 학교시설 해제요구</p> <p>조치결과 : <u>“미반영”</u></p>	<p>Ⅲ-2. 군계획시설 변경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조치결과 : <u>“반영”</u></p>

화순군 관리계획(용도지역, 제2종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8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8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8. 30

(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양정열

나. 제안사유

-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민소득증대로 청정식품의 선호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유기농으로 경작된 곡식을 이용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모하고,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(주)칸네코리아 화순공장 신축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다. 주요내용

- 용역명 :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제2종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
- 용역회사 : 신촌종합건설주식회사(대표 이형석)
-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(안)

구 분	위 치	기 정	변 경	비 고
변경	동면 복암리 산85-1번지 일원	농림지역 : 81,300m ²	계획관리지역 102,900m ²	용도지역변경
		관리지역 : 21,600m ²		
신설			제2종지구단위 계획	복암제2종지구 지구단위 계획 (산업형)

- 사업기간 : 2005 ~ 2007년

- 관계법령 및 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
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3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4. 토론요지

<토론자 : 임지락 의원>

현재 (주)칸네코리아 재무상태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(주)칸네코리아 회사의 재무상태가 호전될 때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함.

5. 심사결과

“계류”

- 6. 붙임 : 화순군 관리계획(용도지역, 제2종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안 의
회의견 제시의 건